

“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”에 대한 검토의견

□ 검토의견

○ 법령적합성

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176조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규정이 19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적합함

○ 내용 타당성

- 지방세법 176조의 주민세 세율규정은 기존에 동은 1,800원, 읍·면은 1,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장이 1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주민세 인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조례안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동은 4,000원, 읍·면은 3,000원으로 정하고 있음
- 주민세의 경우 그 성격이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회비적 성격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두세적 성격이 강함으로 기존의 주민세는 그 세율이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서 지방세로의 준립목적이 문제시 되었음
- 이에 따라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됨

· 다만, 다음 사항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

첫째, 주민세가 인상요인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는 이견이 있으며 이 부분은 이장협의회회의 반대의견서를 참고 바람

둘째, 동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동과 읍·면 주민세 부과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는데, 이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됨.

참고로 경기도 7개 도농 복합시의 경우 4개 시에서 동 지역과 읍·면 지역을 동일하게 세액을 정하고 있고 과주시를 포함한 3개 지역이 차등을 두고 있음